국토교통부			보도자료	4		
		배포일시	2021. 12. 28.(화) /총 3매(본문3)	다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	
담당 부서	도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윤의식, 사무관 박선용, 주무관 박준호 • ☎ (044) 201-3708, 3711			
	도시활력 지원과	담 당 자	 과장 박용선, 사무관 유지완, 주 ☎ (044) 201-3735, 3734 	무관 김권종	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29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9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	

지역(공간) 단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

- 30일부터 도시개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·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-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역·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·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및「도시개발 업무지침」을 30일부터 개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* (도시·군기본계획) 지속가능한 도시·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(국토계획법) (도시개발계획)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(도시개발법)
- □ 이번 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
 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등에서 제시 하고 있는 **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·군기본** 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하였다.
 - *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 방향 제시, 신재생에너지 사용 촉진, 탄소흡수원 확충, 재해취약성 저감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방향

- ②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
 -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·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을 추가하고,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*를 제시토록 하였다.
 - * 향후 「탄소중립기본법」에 따라 지자체에서 '탄소중립 기본계획'이 수립될 경우, 해당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합성도 고려
- ③ 공간구조, 교통체계,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
 - 도시·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, 교통체계, 주거환경, 공원·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하였다.
 - < 부문별 탄소중립 계획요소 주요내용 >
 - ▶ (공간구조) 온실가스 현황지도,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, 흡수원 분포 등 탄소 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하여, 공간구조 개편에 적용
 - ▶ (교통체계) 자전거, 전기차 등 **친환경 교통수단 확대, 녹색물류체계 계획** 등
 - ▶ (주거환경)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,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
 - ▶ (에너지·폐기물) 화석연료 사용 감축방안,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, 자원순환유도 등
 - ▶(**공원·녹지**) **탄소흡수원 확충**,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
- ④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
 - 도시·군기본계획상 **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**도록 **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**토록 하였다.
 - 이에 따라 지자체는 **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**하고,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하여 **감축목표를 달성**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.

아욱러	「도시개	발업무지침	. 개정아의	주 🤉 내 -	ဥ ္	다음과	같다
1 7 7	ユニー	2 H / 1 H	1 / 11 0 1 2 7 1	1 34 71	വ		· 1 .

①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

○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**수소 등의 신·재생에너지 시설 현황**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·재생에너지 발전·이송·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**검토대상을 확대**하였다.

②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

○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하였다.

③ 에너지이용, 탄소저감 등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·관리 강화

- 에너지이용,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.
- 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"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·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."면서
 - "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"이라고 밝혔다.
- □「도시·군기본계획수립지침」및「도시개발업무지침」개정안은 **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**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(도시군기본계획) 도시정책과 박선용 사무관(☎ 044-201-3708), (도시개발계획) 도시활력지원과 유지완 사무관(☎ 044-201-37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